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봉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57

발의연월일: 2022. 9. 22.

발 의 자:전봉민·강기윤·김도읍

김희곤 • 백종헌 • 이종성

이주환 · 이헌승 · 정동만

조경태 · 황보승희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공공기관의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현재 일몰 도래로 종료되었으며,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역시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.

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해당 특례 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일몰 도래 이전에 존재하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다시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적용하고,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

기간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(안 제81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제1항 중 "2017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16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대한 적용례) 제81조제1 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1조(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	제81조(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
전에 대한 감면) ① 「혁신도	전에 대한 감면) ①
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	
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	
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이	
전공공기관"이라 한다)이 같은	
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	
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	
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	
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	
00분의 50을 <u>2017년 12월 31일</u>	2023년 1월 1일
까지 경감하고, 재산세의 경우	부터 2026년 12월 31일
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	
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	
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	
다.	
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	②
대해서는 <u>2016년 12월 31일</u> 까	2023년 1월 1일부터
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.	<u>2026년 12월 31일</u>
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	3
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	
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	

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<u>12월 31일</u>까지 감면한다.

1. • 2. (생략)

④·⑤ (생 략)

<u>2026년</u>
12월 31일
1 • 9 (혀해과 간으)

1.•2. (현행과 샅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